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금채권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 1. 삭제 < 2015. 6. 30.>
 - 2. 삭제<2015. 6. 30.>
 -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12., 2021. 6. 9., 2021. 10. 14.>
 -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30.]

제3조 삭제 <2001. 6. 27.>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1.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문개정 2021. 10. 14.]

-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 1. 삭제 < 2015. 6. 30.>
 - 2. 삭제 <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30.]

-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2. 30.]

-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5. 6. 30., 2021. 6. 9., 2021. 10. 14.>
 - 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 3. 삭제 < 2021. 10. 14.>
 -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23. 3. 8.]

-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2020. 8. 12., 2021. 10. 14., 2023. 3. 8.>
 - 1. 소득금액증명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3. 3. 8.>

[본조신설 2011. 11. 28.] [제목개정 2021. 10. 14.]

-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퇴직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지급금을 받는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대지급금을 받는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따라그 지원 금액을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2015. 6. 30,, 2021. 10. 14,, 2023. 3. 8.>
 -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6. 30., 2021. 10. 14.>
 -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대지급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퇴직

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1. 11. 28.]

제8조의5 삭제 <2024. 8. 6.>

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 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 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8.]

-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8. 29,, 2015. 6. 30,, 2016. 2. 3,, 2021. 6. 9., 2021. 10. 14.>
 -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 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 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2,, 2021, 6, 9,, 2023, 3, 8,, 2024. 8. 6.>
 -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 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8. 12., 2021. 6. 9.>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 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8. 29., 2020. 8. 12., 2021. 6. 9.>
 - 1. 삭제 < 2013. 8. 29.>
 - 2. 삭제 < 2013. 8. 29.>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5. 6. 30., 2018. 1. 24., 2021. 2. 10., 2021. 6. 9., 2023. 3. 8., 2024. 8. 6.>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9, 25,, 2021, 6, 9,, 2021, 10, 14.>
 -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 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8. 12., 2023. 3. 8.>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 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20. 8. 12., 2021. 6. 9.>

-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 6. 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1. 6. 9.>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 1.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 2.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2.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되었을 것
- ③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재직 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퇴직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 청한 금액
- ⑤ 생계비융자의 기간은 3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생계비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비융자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
-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 2. 3., 2020. 8. 12., 2021. 10. 14.>
 -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나. 근무기간
 -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 6. 30.]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

-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 정 2012. 6. 15., 2014. 9. 25., 2020. 8. 12., 2021. 10. 14.>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 가.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 가.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 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 ③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10. 14.>
-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0. 8. 12.]

-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 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4.>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
 -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9.>

[전문개정 2010. 12. 30.]

-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 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2021. 10. 14.>
 -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 제6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30.]

- 제12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 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미회수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미회수자료의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해당 미회수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문서,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
- 2.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사실 및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
- ④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미회수자료의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13조(업무처리규정) ①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2021.

10. 14., 2024, 8. 6.>

-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 3.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 4.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징수 업무
- 5.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업무
- ②「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신설 2024. 8. 6.>

[전문개정 2010. 12. 30.]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전문개정 2021. 10. 14.]

제15조 삭제 <2010. 12. 30.>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7조 삭제 <2017. 2. 3.>

부칙 <제423호,2024. 8. 6.>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